

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

학사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시행지침

제정 2011. 6. 9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사 학위논문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위논문 제출자격) 학사 학위논문 제출 자격은 아래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.

1. 과정수료에 필요한 최저 학점 취득자 또는 취득 가능한 자
2. 졸업(예정) 학년도에 소속 학부(전공)에서 정한 실험, 실습 교과목을 45시간(3학점 1개 과목에 해당) 이상을 이수 또는 이수가능한 자(자연계열만 해당)
3. 소속 학부(전공)에서 정하는 요건이 있을 시 이를 충족한 자

제3조(학위논문 신청 및 심사대상자 결정) ① 학위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간에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속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논문심사원
2. 기타 각 학부(전공)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

② 각 학부장은 제1항의 학위논문심사 서류를 제출한 자 중에서 논문심사 대상자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1학기는 4월말, 2학기는 10월말까지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논문지도교수의 선정) ① 논문지도교수의 선정은 졸업 학년 초 3개월 이내에 한다.

② 논문지도교수는 학생 1인당 1명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2인 이내의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.

1. 학제적 성격의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
2.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③ 논문지도교수 변경은 선정 후 1개 학기 이내에 할 수 있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1개 학기를 경과한 후에도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.

제5조(논문지도교수의 자격)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이 소속된 학부의 전임교수, 기금교수

로, 공동논문지도교수는 전임교수, 기금교수,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로 한다.

제6조(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구성) 논문 심사위원은 3인(위원장, 위원 2인) 이상의 전임교수, 기금교수,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로 구성하되, 학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장이 위촉한다.

제7조(논문심사) ① 각 학부의 장은 학위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학부장 또는 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논문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각 학부의 장은 논문 심사시 예비심사 및 본심사 등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, 최종 논문심사는 공개발표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제8조(논문심사평가) 논문심사 평가기준은 각 학부에서 정하며, 그 판정은 급(S) 또는 낙(U)으로 표기한다.

제9조(학위논문의 대체) ①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12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학사학위논문 제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부(전공)는 졸업종합시험, 실기발표 또는 학부(전공)별로 정한 실적심사로서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하는 학부(전공)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.

② 졸업종합시험, 실기발표 및 실적심사는 소속 학부장 주관 하에 실시하며 그 판정은 급(S) 또는 낙(U)으로 표기한다.

③ 실기발표 및 실적심사에 대한 평가는 논문심사방식에 준하며, 실기는 공개발표하여야 한다.

제10조(학위논문의 작성 및 제출) ①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학위논문 심사에서 합격 받은 자는 심사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최종 인증된 학위논문 PDF파일 또는 전자파일을 당해학기 소정기간 내에 학장이 정하는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각 학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위논문 PDF파일 또는 전자파일 제출기한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장된 자에게는 학위 논문을 제출한 학기에 학위를 수여한다.

제11조(학위논문제출 횟수 및 허용기간) 학위논문은 과정수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정수료 후 2년 이내에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.

제12조(우수 학위논문에 대한 시상 등) ① 학장은 학위논문 내실화 및 우수 학위논문 작성을 권장하기 위하여 우수 학위논문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심사를 통하여 상장 및 상품을 시상할 수 있다.

② 학장은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제1저자로 게재할 경우 논문게재료 및 논문게재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(제105호, 2011.6.9.)

제1조 이 지침은 2012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권장하여 실시하되, 2014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실시한다.

제2조 이 지침의 제7조 제2항 및 제1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첨 1]

종별 구분	학과(부)명	비고
술업논문심사	전 학부(조경학 전공자 중 설계발표자 제외, 재료과학 전공 제외)	
설계발표	조경학전공(술업논문 제출자 제외)	
포스터발표	환경재료과학 전공	

학사학위 논문 심사원

주 소 :
성 명 : (한글) (한)
학 번 :
학 력 : 20 년 월 일 농업생명과학대학
20 년 월 일 농의생명과학대학

논문 제목 :

논문 작성인(해당란에 /표) : (한글), (영어), ()

농업생명과학대학 학사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2 3
사학위 논문심사를 맡고자 심사원을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 상 인 : (인)

장기자의 지도교수로서 학력, 인품, 태도 등이
좋다고 인정하여 추천합니다.

논 문 지 도 교 수 : (인)

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 귀하